원격강좌운영규정 5-1-5

규정번호 5-1-5
제정일자 2002.3.1
최근개정 2025.3.31
개정차수 19차 개정
관리부서 원격교육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원격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용어의정의) ‘원격강좌’에 대해 다음 항으로 정의한다.(조 신설 2020.03.30.)

① ‘원격강좌’는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70% 이상을 원격(방송, 통신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② ‘원격병행수업’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의미한다.(개정 2020.12.07.)

제3조(위원회) <삭제(2025.3.31.)>

제4조(원격강좌 운영) 원격강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03.30.,2025.3.31)

1. 신규 원격강좌 교과의 선정(호변경 2020.12.07.)
2. 원격강좌 콘텐츠의 개발 결과의 적정성 판단(호변경 2020.12.07.)
3.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보완, 폐기 등에 대한 여부를 판단(호변경 2020.12.07.)
4. 비대면교육 추진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호 신설 2020.12.07.)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1.25., 호변경 2020.12.07.)

제5조(교육과정 편성) 원격강좌 운영교과목은 학칙에 의거, 학과 또는 해당부서가 편성한다.(개정 2020.03.30.)

① 원격강좌 전공 교과목은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개설된 총 전공과정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40이내로 편성한다.(개정 2021.09.13.)

② <삭제(2023.06.19.)>

③ 대학 e-러닝 학점교류 교과목은 해당 대학간 운영협약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개설학점 산정에 포함한다.

④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총 개설학점 산정 시 예외로 한다.

⑤ 위 ①,②항의 경우, 국가의 방침이나 천재지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0.12.07.)

제5조의2(교과편성) <조삭제 2020.03.30.>

제6조(수강신청) ① <삭제(2023.09.25.)>

② 신청학점은 학칙에 정한 총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은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2023.09.25.)>

제7조(강의평가 및 공개) ① 원격강좌 강의 평가는 학기별로 2회로 하며,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지침을 따른다.(개정 2019.11.25., 2022.08.08.)

② 원격강좌 운영교과목 일반인 공개는 교수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하며, 공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2.08.08.)

제8조(수업기간 및 수업주수) ① 원격강좌 수업기간 및 수업주수는 일반강좌와 동일하게 15주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일정을 준수한다.(개정 2022.08.08.)

② 원격강좌 계절학기의 수업기간 및 수업주수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08.08.)

제9조(시험) 시험은 과제물부과, 온라인 시험, 출석시험을 병행하여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2.08.08.)

제10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의 준거와 비율은 시험성적60%, 평소성적 20%, 출석성적 20% 등으로 구성하여 성적을 부여하되, 강좌별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25.)

② 성적평가단위로 A^{+}, A^{0}, B^{+}, B^{0}, C^{+}, C^{0}, D^{+}, D^{0}, F급으로 분류하며, D^{0}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③ 성적평가는 학기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Web상에서 수강학생들의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1조(시간계정) ① 원격강좌의 시간계정은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공유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 시간계정은 50%만 인정한다.(개정 2019.11.25.,2023.08.07)

② 원격강좌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출강일수 산정은 원격강좌당 1일 출강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11.25.)

제12조(콘텐츠개발) ① 콘텐츠개발은 담당교수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외부 수주에 의하여도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② 콘텐츠 개발비는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5.)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 교비 및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원격강좌로 개발된 교과목의 소유권은 우리대학과 개발자가 공동으로 갖는다.(신설 2020.03.30., 개정 2022.08.08)

①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사용권은 학교가 갖는다.

② 원격강좌 및 원격병행수업 콘텐츠 운영 시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배 사항은 개발자가 법적 책임을 갖는다.

③ 교비의 지원없이 개발된 우리대학 소속 교원의 원격강좌 콘텐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개발자는 원격강좌 콘텐츠 활용을 위한 외부 출강 시 규정에 의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교내는 물론 타교 출강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부컨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 ① 외부컨텐츠 사용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3)

② 외부콘텐츠 인정기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15조(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원격강좌의 교수자 및 학생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개인정보보호 규정」및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한다.(신설 2022.08.08.)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7> <생략>

<58>원격강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3조4호, 제11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9>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원격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가상(사이버)” 및 “가상”을 각각 “원격”으로 한다.
③ “컨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
④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제4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